

# 조선 후기 나례청(儺禮廳)의 운영과 그 변화 양상\*

오진희\*\*

## 목 차

- I. 머리말
- II. 나례청(나례도감)의 정책 변화
- III. 나례청의 기능 변천
- V. 나가며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조선 후기 국왕 환궁 행사나 중국 사신 영접 시 의전 행사에서 산대희(山臺戲, 산대나례)를 관할했던 나례청(나례도감)의 운영과 그 변화를 분석한 연구다.

필자는 나례청의 정책과 실무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모의(附廟儀)를 거행한 뒤 왕의 환궁 행사로서 열렸던 산대나례의 공식 폐지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영조 30년(1754)이 아니라 영조 20년(1744)임을 확인했다. 산대(山臺) 중 고정형 대산대(大山臺)가 선조 35년(1602)까지 세워졌다가 그 이후 이동형 예산대(兪山臺)만 설치됐고, 때로는 예산대 없이 나례가 연행되기도 했던 것을 알릴 수 있었다. 정조 8년(1784년)에는 문효세자 책봉을 축하하는 청나라 사신 영접을 위해 산대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왕명을 어기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예정된 산대나례는 연행됐지만, 그 후부터 더는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학계에서 알려진 것처럼

---

\* 본 논문은 2024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9043023).

\*\* 吳眞僑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박사수료  
valere02@naver.com

투고일: 2024. 11. 17. 심사완료일: 2024. 12. 24. 게재확정일: 2024. 12. 2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7..151>

1784년에 산대나례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라기보다는 나례 연행을 중단하는 정책적 판단이 순조 때까지 이어져 정착된 결과로 보인다.

나례청은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기구로, 영접도감과의 중복업무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나례청과 재인 조직의 운영 양상의 변화를 교차로 검토하면서 나례청의 주무 기관이 포도청으로 이관된 것이 국가적 나례 행사의 축소, 시정(市井) 연희의 성장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784년 이후에도 나례청이 존재했으며 재인청(才人廳)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심어** | 나례도감, 나례청, 나례, 산대나례, 산대회, 재인청, 포도청

## I. 머리말

‘나례(儺禮)’는 원래 새해를 맞아 액을 막기 위해 음력 선달그믐에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는 벽사축역(辟邪逐疫) 의식이다. 고대부터 중국에서 행해진 풍속이다. 나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 정종 6년(1040)에 나타난다.<sup>1)</sup> 나례 풍속은 궁궐, 관아, 민간에서 모두 행해졌으며,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무잡희가 발전하고 제의성보다는 연희성이 확대돼 조선 시대에는 나례가 나례희(儺禮戲), 나희(儺戲)로 인식되면서 점차 공연과 같은 의미로 불리게 됐다.<sup>2)</sup> 따라서 나례는 축역을 목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치르는 제의로서만이 아니라, 사신 영접의 산대나례처럼 공연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사진실은 본래의 축역 의미를 지닌 제의로서의 나례를 ‘구나(驅儺)’, “잡희를 구경하는 순수 오락 행사”를 ‘관나(觀儺)’, 산 모양의 무대 구조물인 산대(山臺) 주변에서 가면극, 줄타기, 땅재주, 접시 돌리기 등 잡희를 연행하는 도상(途上)

1) 『高麗史』, 卷64, 志 卷第18 禮6 軍禮條 季多大儺儀.

2) 전경옥, 『한국 전통연희사』, 2020, 188쪽.

행차 시의 공연을 ‘설나(設儺)’로 구분해 나례를 설명한 바 있다.<sup>3)</sup> 대표적인 설나는 바로 국왕의 환궁 행차 시 또는 중국사신 영접 시의 나례 공연으로, 조선 후기 이 같은 산대희(山臺戲)를 담당한 관청이 나례도감(儺禮都監) 또는 나례청(儺禮廳)이었다.

그동안 나례도감 및 나례청에 관해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돼왔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진실은 『나례청등록(儺禮廳騰錄)』(1626)을 번역해 인조 대 나례청에서 동원한 연희자와 장인(匠人)에 관한 사실들과 나례청에 공조한 중앙 관청과 지방 감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학계에 공유했다.<sup>4)</sup> 『광해군일기』, 『나례청등록』, 「완문등장팔도재인(完文等狀八道才人)」(1824, 일명 「갑신완문(甲申完文)」)<sup>5)</sup> 등 사료들을 토대로, 사진실은 민간의 재인 조직이 병자호란(1636년) 이후 나례청으로부터 재인 상송(上送)과 공연 실행을 위탁받아 활동하기 시작하며 자치조직으로서 성장해 나갔다고 해석했다.<sup>6)</sup> 나례청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로는 나례청의 기원과 유래를 추적하고 좌우 양변의 개념이 갖춰진 흐름을 분석한 윤아영의 연구가 있다.<sup>7)</sup> 그는 또 조선 후기의 국가적으로 연행된 나례를 분류해 관련 기록과 연행 종목들을 정리했다.<sup>8)</sup>

지금까지 연구들을 통해 임금 환궁 행사 시의 나례는 인조 이후에, 중국

- 3) 사진실, 「山臺의 무대양식적 특성과 공연방식」, 『구비문학연구』 7권,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367~369쪽.
- 4) 사진실, 「나례청등록」, 『문헌과해석』, 태학사, 창간호 1997·여름호·가을호·겨울호 1998; 사진실,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태학사, 2017, 201~261쪽. 『儺禮廳騰錄』, 禮曹(朝鮮) 編, 간행연도 [仁祖6年(1627)], 책권수 : 1冊(26張), 筆寫本, 규장각본, 청구기호: 奎15147. 이 등록은 1626년(인조4) 명 사신이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전하기 위해 조선을 찾았을 때 열린 나례의 준비 사항을 담아 예조에서 1627년 간행한 것이다.
- 5)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301~303쪽
- 6)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태학사, 2017(2쇄), 322~323쪽.
- 7) 윤아영, 「나례 준비기관의 변천과 양변의 전통」, 『국악원논문집』 제26집, 국립국악원, 2012.
- 8) 윤아영, 「조선후기 儺禮의 용도와 연행종목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15, 온지학회, 2006.

사신 영접을 위한 나례는 정조 8년(1784) 이후에 폐지됐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되었다.<sup>9)</sup> 더불어 정조 8년 당시 산대회의 예행연습에서 총포사건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sup>10)</sup>로 사신 영접 행사 이후에는 나례청이 해체됐으며 공식적으로 산대나례도 중단됐다고<sup>11)</sup>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나례청이 그 이후에도 지속해왔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나타난 바 있다. 김종철의 연구는 충청도 재인청(광대청)과 중앙 나례청이 예납(例納)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영수증이 담긴 고문서(「동치 5년 병인년 3월 22일 수표(同治五年丙寅三月二十二日手標)」(1866))를 발굴하고 분석해 나례청이 중국사신 영접 시의 산대회가 더 이상 연행되지 않게 된 1784년 이후에도 존재했음을 시사했다.<sup>12)</sup>

필자는 기존 선행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례청을 중앙 관청 조직으로서 바라보고 여기서 준비하고 연행한 산대나례, 조직의 성격이나 기능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나례청의 운영과 그 변화 양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술한 김종철의 연구처럼 나례청은 관(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전국적 재인 조직체인 재인청(才人廳)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사료를 토대로 나례청의 정책적 변화들과 재인청의 활동 양상을 교차로 비교해 나례청의 기능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

9)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348쪽.

10) 안대회, 「18·19세기 탈춤꾼 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1) 「나례도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해(1784) 나례 행사의 예행연습인 사습私習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나례도감이 해체되었고, 이를 계기로 산대나례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12) 김종철, 「19세기 충청도 광대 도중(都中)의 존재와 그 권익 활동」,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3.

## Ⅱ. 나례청(나례도감)의 정책 변화

본고는 조선 후기 국왕 환궁 행차나 중국 사신 영접 시 도상(途上) 잡희를 담당한 임시기구인 나례도감<sup>13)</sup> 또는 나례청의 공연운영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의전 행사에서는 인형 잡상으로 장식한 거대한 산 모양의 무대 구조물인 산대(山臺) 또는 산봉(山棚)을 세워 주변에서 가면극, 줄타기 등 잡희를 벌이는 산대회(山臺戲)가 상징적으로 연행됐다. 이는 백희(百戲) 또는 잡희(雜戲) 등이 포함된, 도상(途上)의 개방적인 축제로 산대나례(山臺儺禮)라고 불렸다. 조정에서는 지방 관아들에 하달해 차출한 재인들과 장인(匠人)들을 행사에 동원했고, 이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인건비도 지급됐다. 한양의 중앙 관서에 속한 관속(官屬)들이 조정의 결정에 따라 행정 처리와 인력 동원, 각 도에 대한 연락, 치안 유지 등을 맡아 운영하고 실무를 진행했다.<sup>14)</sup> 이 같은 국가 산대회의 전통은 조선전기에도 나타난다. 부모례(耐廟禮), 친경례(親耕禮), 능행(陵行) 등의 임금의 행행(行幸)이나 중국 사신 영접을 위한 대규모 공연행사, 화산대를 설치하고 배우의 잡희 공연을 벌였던 일은 주로 의금부와 군기시(군기감의 후신) 두 기관이 재인들과 장인들을 동원해 운영하는 주무관청으로 활동했다.<sup>15)</sup>

13) ‘도감(都監)’은 국가 비상시, 외국 사신의 접대가 필요할 때, 국가 장례가 발생할 때, 노비제도와 같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할 시와 같이 비일상적인 사안을 처리했던 임시관청을 일컫는다. 도감은 상설 관서만으로는 불가능한 국가 사안을 처리하는 권설도감(權設都監)으로 여러 관서의 공조를 통해 운영됐다. 도감 최고 책임자는 정1품의 품계를 갖는 도제조(都提調)로,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제조 급에 배치됐고, 실무진에는 참상관(參上官)인 낭청(郎廳) 이하가 업무를 맡았다. 청(廳)이 도감보다 위상이 낮았다는 점을 책임자의 품계로 알 수 있다. 청 아문은 정2품 품계를 지닌 판서(判書)가 대부분 주관했다.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한국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6, 7쪽 참고.

14) 사진실, 앞의 책, 2017, 201~261쪽.

15) 『世宗實錄』, 世宗 6年(1424) 6月 14日(부모 후 환궁 행사), 『端宗實錄』 端宗 卽位年(1452) 8月 10日(사신 영접 행사), 『中宗實錄』 中宗 4年(1509) 11月 8日(관나(觀儺)) 등.

왜란과 호란 이후인 조선 후기에는 이 같은 규모 있는 국가 행사들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정조대까지도 중국 사신 영접 때에 행해진 도상 잡희 행사는 이어졌다. 조선 후기 궁정에서 주관하는 구나(驅難, 대나례)는 인조 대 이후 정지됐지만, 숙종 대에 관상감(觀象監)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간소화해 복구되다<sup>16)</sup> 영조 대에는 궁중의 제석 나례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sup>17)</sup> 여기서는 나례청이 담당했던 부묘 후 나례와 사신 영접 나례를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 1. 부묘 후 나례 연행과 폐지

전술했듯이 나례 공연 중에서도 인력과 물력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는 ‘나례도감’ 또는 ‘나례청’과 같은 임시관청을 세워 일을 진행했고, 행사가 끝나면 해당 관청은 폐지됐다. 조선 전기에도 왕의 행행과 사신 영접 행사 시의 도상 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록에서 ‘나례도감’ 또는 ‘나례청’이라는 기관명이 확인되는 것은 조선 후기인 광해군 대부터다.

**나례도감(儺禮都監)**이 아뢰기를, “이번 9월 16일 전하께서 직접 종묘에 고하는 제사를 지낼 때 쓸 헌가악기와 잡상들을 전교에 따라 빈틈없이

---

16)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二, 政教典故, 俗節雜戲, “인조 원년에 나례(儺禮)를 드디어 정지하였는데, 숙종 18년에 명하여 《오례의》에 의하여 설행하도록 하였다.” 국역 한국고전종합DB 참고 ; 『肅宗實錄』, 肅宗18年(1629) 12月 18日 壬辰.

17) 『英祖實錄』, 英祖 35年(1759) 12月 26日 壬寅 “아! 《주례(周禮)》에 있는 바의 나례(儺禮)도 지나간 해에 오히려 제거하도록 명하였는데, 더구나 삼대(三代) 이후의 오하(吳下)의 풍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후로는 경신일에 촛불을 올리는 것과 교년일(交年日)에 거행하는 일은 모두 그만두게 하여 내가 정도를 지키며 지나간 해를 채득하는 뜻을 보이고 한결같이 오하(吳下)의 비루한 풍속을 씻어버리도록 하라.”;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考異」 卷之一 軍禮考異, 季冬大儺儀. “季冬大儺儀 今罷.”

보관하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좀먹고 색이 바래서 파손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일은 반드시 역군을 많이 배정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전례대로 병조로 하여금 역군을 배정하여 주게 하소서. 희극을 하는 재인(才人)을 보내라고 기일 전에 각 도에다 공문을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전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식을 올릴 기일이 이미 임박하여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어려울까 걱정되니, 각도 관찰사에게 파발마로 공문을 보내 때맞추어 올려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본 도감의 등록에 오른 장인들이 모두 다른 도감에 소속되었으니, 일이 끝날 동안까지 다시 배정하여 공역(工役)에 나가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sup>18)</sup>

위의 내용은 광해군이 부모(祔廟)를 마친 후 환궁할 때 행해질 나례에 대해 나례도감 관원(官員)이 설명하는 대목이다. ‘나례도감’이라는 명칭이 문헌에서 인조 대에 처음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있지만<sup>19)</sup>, 그보다 앞서 『광해군일기』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록에서 관원은 산대와 같은 공연 무대나 이를 장식하는 헌가(軒架)와 잡상(雜像)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병조에서 인력을 보내줘야 하고, 각도 관아에서는 재인을, 현재 다른 도감에서 일하고 있는 장인들도 모두 나례도감에 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례도감 관속들이 각도에 잡회를 연행할 외방 재인들을 구하고, 병조 등 다른 관청에도 무대 설비와 관련한 인력을 지원받았으며 이렇게 동원된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반정을 일으키고 즉위한 인조는 상징적으로 침향산(沈香山)을 태우는 행

18) 『光海君日記』(중초본, 光海 11年(1619) 9月 2日 辛巳. 이에 앞서 광해군 대 기록 중 ‘나례도감’은 『光海君日記』(중초본 光海 8年(1616) 8月 24日 壬戌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右邊離禮都監啓曰: “離禮之役, 一日爲急, 故都監官員則凡公會勿參, 差祭安徐事, 已爲啓下.”).

19) 윤아영, 「나례 준비기관의 변천과 양변의 전통」, 『국악원논문집』 제26집, 국립국악원, 2012, 250쪽.

위를 벌이면서 부묘 후 나례를 열었던 관행을 정지하도록 했다.<sup>20)</sup> 이는 이동형 산대인 예산대의 일종인 침향산을 공개적으로 태워 없애며 민력 낭비와 속(俗)된 잡희 등을 구경하는 분위기를 꼬집어 전대(前代)의 광해군 정권을 비판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sup>21)</sup>

이후, 영조 20년(1744)에는 『국조오례의』를 보완해 정리한 전례서인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부묘 후 나례 연행을 폐지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부대묘의(祔大廟儀)’를 제목으로 한 기록에서 “환궁의 의례 시 의금부와 군기서가 나례를 열었고, 기로·유생 및 교방이 가요를 했고, 길거리에 결채를, 궐문 밖에는 좌우 채봉을 섰던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아 왔는데 지금, 갑자년에 영원히 혁파한다”며 환궁하면서 음복연(飮福宴)을 했던 것 역시 없앴다고 명시했다.<sup>22)</sup>

같은 내용은 영조 28년(1752)에 편찬된 상장(喪葬) 전례서인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도 실려 있다.<sup>23)</sup> 이처럼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된 기록에 따라, 제도적으로 부묘 후 나례를 폐지한 시점은 영조 20년인 174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에 영조 30년인 1754년으로 부묘 후 나례의 제도적 폐지 시기를 봤던 것<sup>24)</sup>은 정정되어야 한다.

## 2. 중국사신 영접 나례 운영과 폐지

부묘 후 나례가 인조 대 이후 정지되다 영조 대에 제도적으로 폐지된 데 반해, 중국 사신 영접 행사 시의 나례는 정조 대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20) 『仁祖實錄』, 仁祖 1年(1623) 3月 25日 乙卯.

21) 송지원, 「조선시대 산대(山臺)의 역사적 전개」, 『한국문화와 예술』 28, 2018, 148~149쪽.

22)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考異」 卷之一 凶禮考異 祔大廟儀, 조선시대법령자료.

23)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제43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 79~80쪽.

24) 사진실, 앞의 책, 2017(2쇄), 370쪽; 「나례도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이를 관장한 나례도감이나 나례청은 여전히 존재했다.

인조 대 칙사 영접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정묘호란(1627)을 겪고 난 지 7년이 흐른 뒤인 1634년 소현세자의 왕세자 책봉을 승인하는 명 황제의 칙서를 전하는 사신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변나례도감을 주관하는 군기사가 나례를 위한 무대 설비를 위해 원래 차례가 아닌 각 고을의 장인(匠人)들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들의 인건비로 조번목(助番木)을 올리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개성 유수(留守)가 춘궁기에 무리라며 호소한 기록이 있다.<sup>25)</sup> 이때도 여전히 군기사가 외방의 인력들을 물색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감은 1품 아문으로서 재원과 잡물을 중앙 관서나 외방 관아에 관문(關文)을 통해 요구할 수 있었는데<sup>26)</sup> 여기서도 관문이 우변나례도감에서 보내진 것으로 보아 경기 유수부(留守府)보다 나례도감이 상급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숙종 대와 영조 대에는 청 사신 영접 시 산대나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숙종 29년(1703)에도 산봉이 설치되고 잡희가 공연됐다. 이때 나례도감이 광대를 모아 벌인 산대희로 한양도성의 길거리에 인파가 넘쳤고, 그 속에 유자(儒子)도 섞여 공연을 즐겼다는 보고를 들은 왕은 선비들의 잡희 관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간 과거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sup>27)</sup>

중국 사신 영접 시 산대나례 때에는 간혹 압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 전기에도 관련 사고가 있었고<sup>28)</sup> 조선 후기인 영조 대에도 발생했다.

25) 『承政院日記』, 42冊, 仁祖 12年(1634) 3月 28日 甲寅.

26) 나영훈, 앞의 논문, 286쪽.

27) 『燃藜室記述』, 別集 第5卷, 事大典故.

28) 『仁宗實錄』, 仁宗 1年(1545) 5月 11日 壬申. “군기시(軍器寺)가 세운 산대(山臺)의 한 모퉁이가 무너져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광화문(光化門) 밖에 의금부(義禁府)와 군기시가 좌우로 나뉘어 산대를 설치하여 각각 마음껏 놀이하는데, 모두가 조사(詔使)를 위한 것이다.】 구경하던 자가 많이 놀러 갈려 죽어 수십인이나 되었다. 【장마가 갓 개이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구경하였는데, 두세 살쥔 되는 주인의 아이를 업은 민가의 노비(奴婢)도 와서 구경하다가 함께 깔려 죽었다.】 ”

숙종 대 기록과 마찬가지로 영조 14년(1738) 2월에도 산봉 나례를 관광하던 사람들로 붐볐는데 이 현장에서 밟혀 죽는 자도 많았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sup>29)</sup> 그 당시 칙사의 방문목적은 세자 책봉을 축하해주러 온 것으로 잘못 알아 혼선이 생겨 나라의 문제가 되기도 했다.<sup>30)</sup> 사도세자 책봉과 관련해 청나라에서 봉전칙사(封典勅使)가 온 것은 그다음 달인 3월 27일이었다.<sup>31)</sup>

조선 후기 중국 사신 영접을 위한 나례 설행은 그 규모나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양난 이후 물자와 인력 동원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세나 경제가 회복됐던 중흥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청 사신이 한양도성에 이르기 전에 영접 행사로 나례나 연향 등을 원치 않거나 규모를 줄이기를 바라는 의향을 보일 시에는 별도로 조직하려고 했던 나례청을 정파(停罷)하고 재인 모집을 취소하거나 줄이기도 했다.<sup>32)</sup>

개방 공간에서 펼쳐진 나례 공연에서 무대 구조물인 산대의 모습도 조선 전기에는 대규모 고정(固定) 산대인 대산대(大山臺)가 나타났지만, 후기로 오면 선조 대 이후 대산대의 존재는 사라지고 수레가 달린 예산대(산봉, 헌가산대(헌가)<sup>33)</sup>)나 비단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장식된 가설 무대인 채봉 등이 설치되었다.<sup>34)</sup> 그동안 밝혀진 기록화에서 산대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예산대는 아극돈(阿克敦, 1685~1756)의 <봉사도(奉使圖)>(1725) 제7폭 그림으로, 채봉은 『정리의괘』에 수록된 <낙성연도>(1796)로 증명됐다.<sup>35)</sup> 특히

29) 『英祖實錄』, 英祖 14年(1738), 2月 19日 辛丑.

30) 『英祖實錄』, 英祖 14年(1738), 2月 7日 己丑.

31) 『英祖實錄』, 英祖 14年(1738), 3月 27日 己卯.

32) 『承政院日記』, 118冊 孝宗 2年(1651) 1月 9日 丁亥; 1078冊 英祖 28年(1751) 1月 17日 己卯.

33) “헌가산대는 예산대와 같은 것이다” 「산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34) 선조 35년(1602) 중국 사신 고천준(顧天竣)이 조선을 방문한 이후부터는 중국 사신 영접 나례에서 대산대가 설치되지 않았다. 『光海君日記』(중초본), 光海 12年 9月 3日 丁丑; 전경옥, 앞의 책, 249쪽.

35) 이미지 No.99015·No.99019, 무형유산디지털아카이브, 국립무형유산원.

<봉사도> 제7쪽에서 산봉의 왼쪽에는 다양한 잡희가 연행되고 있는데 이 중 줄타기, 접시 돌리기, 땅재주와 함께 네 명의 탈춤꾼들이 가면극을 벌이는 장면도 보인다. 이는 사신 영접 시 나례 공연에서 탈춤의 유무에 대해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을 바로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sup>36)</sup>

영조 31년(1754) 8월 7일 기록을 보면 칙사 영접 시 산봉을 생략한 나례를 연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sup>37)</sup> 당시 칙사 편에서 산대(헌가)를 설치하지 않고 잡희만 행하기를 원했고, 영조는 산대 없는 나례 연행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산대와 같은 대형 무대 시설 없이 목마(木馬) 위에서 재주를 벌이는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영조 14년(1738) 사신 영접 나례 행사 이후 거의 반세기만인 정조 8년(1784) 12월 초에 산봉을 세우고 나례를 연행했다.<sup>38)</sup> 이는 문효세자 책봉과

36) 조원경, 『仁祖時代의 離禮廳錄』, 『서울과 역사』, 서울역사편찬원, 1958 에서는 『나례등록』을 분석한 결과 칙사 영접 시 산대나례에서 가면극 연행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기서 『나례등록』은 사진실의 번역과 해석이 이루어진 『나례청등록』과 같은 자료다. 본고 각주4) 참고.

37) 『承政院日記』, 1122冊 英祖 31年 8月 7日 戊申.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接遠使移文, 則勅行所謂, 除減軒架, 卽山臺之謂, 只設離禮, 卽呈才人等雜戲之謂云矣.”, “至除宴享軒架等事, 上曰, 除軒架, 而只設離禮, 則無舞童才人乎? ……上曰, 軒架不設, 則將給其價耶?”

38) 안대회, 「18·19세기 탈춤꾼 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50쪽. 그러나 사진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사신 영접을 위해 정식으로 열린 나례가 50년 만이 아니라 근 30년 만에 열렸다는 주장이다. 사진실의 견해대로 영조 31년인 1755년에도 정 사신의 행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헌가, 즉 예산대와 같은 산봉을 제외하고, 소규모 잡희와 연향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연 즉 나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국적 물자와 인력이 크게 동원되는 ‘산대나례’를 사신 영접 목적의 대규모 정식 나례로 보고, 정조 8년(1784)의 산대나례가 열린 시점과의 간극을 고려해 본다면 안대회의 견해가 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진실, 「인조 이후 나례의 사습(私習)과 산대도감의 흥행활동」, 『공연문화연구』(29), 한국공연문화학회,

관련해 황제의 봉전칙(封典勅)을 전하는 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그해 8월 문효세자의 책봉식이 거행된 바 있다.<sup>39)</sup> 『실록』에 따르면, 그해 11월 20일 봉전칙사가 압록강을 건넜고, 12월 3일에는 모화관에 도착한 칙사를 정조가 직접 영접하고 창덕궁으로 옮겨 다례와 연례를 열었으며 이날 창덕궁에서 문효세자는 칙사로부터 하례(賀禮)를 받았다.<sup>40)</sup> 12월 4일과 5일 사신들의 접대가 이루어졌다.<sup>41)</sup> 중국 사신을 맞이하며 한양이 떠들썩해졌는데, 이는 산대회의 영향이 컸다.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일기인 『흠영(欽英)』에는 당시 12월 초하루 밤에 산대회를 봤다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42)</sup> 이를 통해 당시 오랜만에 산대회가 실제로 거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좀처럼 국가 산대회의 연행 기록이나 나례도감 또는 나례청의 언급을 『실록』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산대회는 『훈국등록(訓局臚錄)』과 『어영청등록(御營廳臚錄)』,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등 여러 기록을 토대로 정조 8년(1784년) 11월 칙사 영접을 위한 산대회 예행연습 시 발생한 사고들이 국가의 산대회 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sup>43)</sup> 이 연구에 따르면 정조는 칙사가 오기 전부터 오랜만에 열리는 산대회에 대해 염려하며, 예산대 주변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나례도감의 인력관리에 주의하며, 산대회 설행으로 상인과 부호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예행연습 때부터 나례도감의 인력 중 일부가 관례를 핑계로 야밤에 총을 쏘 큰 총포 소리로 도성에 소요를 일으킨 일, 국기일(國忌日)임에도 연습을 핑계로 풍악을 울린

2014, 100쪽; 『承政院日記』, 1122冊 英祖 31年 8月 7日 戊申; 英祖 31年 8月 19日 庚申 참조.

39) 『正祖實錄』, 正祖 8年(1784) 8月 2日 乙酉.

40) 『正祖實錄』, 正祖 8年(1784) 11月 20日 辛未, 12月 3日 乙丑.

41) 『正祖實錄』, 正祖 8年(1784) 12月 4日 丙寅, 5日 丁卯.

42) 안대회, 앞의 논문, 256쪽. 『欽英』은 유만주가 1775년부터 1787년까지 적은 일기다.

43) 위의 논문.

사건, 산대회를 구실삼아 상인과 지방관아에 비용을 떠넘긴 일 등이 잇따랐다.<sup>44)</sup>

그동안 학계에서 정조 8년(1784)에 산대나례와 나례도감이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이유는 재인청 관련 문서들의 해석에 기인한다. 이 해인 갑진년(1784) 이후 칙사(勅使) 영접 때의 산대나례가 정지됐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갑신완문(甲申完文)」(1824)에 나온다.<sup>45)</sup> 또한, 「경기도창재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1836)에서도 비슷한 대목을 읽을 수 있다.<sup>46)</sup>

정조는 1795년에도 신하들과 산대회를 논의하면서 국가적 연행 공연 양식으로 더는 논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열한 번째, 산대놀음을 하는 무리를 성문 밖으로 쫓아내자는 일입니다. 나례(儺禮)는 전래된 지 오래되었고 잡희(雜戲)라고는 해도 우리나라에서 칙사를 위해 도감을 설치하기까지 하니, 칙사들이 찾지 않으면 그만이라니와 혹시라도 찾을 경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구히 혁파하기 어렵다면 성문 밖으로 내쫓는 것은 한때 소란스럽게 하고 마는 데에 지나지 않을 듯합니다……

**열한 번째, 산대놀이에 관한 일인데, 그만두면 될 일이지 무슨 소요의 단서가 있단 말인가.** 경은 추고하겠다.<sup>47)</sup>

---

44) 위의 논문, 250~256쪽.

45) “…甲辰年以後 左右山不爲設行是乎乃…”. 김동욱, 앞의 책, 301쪽.

46) “갑진(1784) 이전의 칙행조사(勅行造山)시에는 말은 바가 스스로 중하였으나, 갑진 이후에 조산의 규칙이 깨지자 우리 무리들도 곧 한산해지게 되었다.”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下』, 서울 : 東文選, 1991, 281~284쪽.

47) 『日省錄』, 正祖 19年(1795) 10月 19日 丙申. “其一山臺戲子遊黜城外事也儺之傳來久矣雖是雜戲而我國爲勅行而至設都監彼若不索見則已如或索見則亦不可昔有而今無既難永罷則城外遊黜恐不過一時騷擾而止……其十一山臺戲子事置之則可而已有何騷擾之端卿則推考”. 국역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이어 순조 대에는 칙사 영접 일정이 잡힐 때 나례 설행을 고민하는데, 그때마다 연행하지 않기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조 1년(1801)에는 결채(結彩)와 나례를 그만두기로 했고<sup>48)</sup>, 순조 3년(1803)에는 이미 사치스러운 불거리인 가무동, 나례, 유관우(游觀牛) 등이 면제되는 것이 오래돼 온 상황에서, 청 사신 측에서 모른다면 굳이 이 같은 구례(舊例)를 거론해 의향을 묻지 않기로 논의했다.<sup>49)</sup> 순조 20년(1820)에도 칙사 행차 시 나례의 전례를 없애고 대궐문, 거리, 외방에서의 결채도 면제키로 했다.<sup>50)</sup>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1784년 산대나례의 공식적 폐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1784년 산대나례의 공식적 폐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1784년 산대나례의 공식적 폐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1784년 산대나례의 공식적 폐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Ⅲ. 나례청의 기능 변천

#### 1. 나례청의 위상과 주무관서의 변경

나례도감이나 나례청은 조선 후기 사신 영접을 위해 주로 설치됐기에 영접도감(迎接都監)과 협조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영접도감은 나례도감이거나 나례청보다 업무 분야의 수가 매우 많았다. 영접도감을 구성하는 부서는 그 업무 분야만큼이나 많았고, 1청(廳) 아래 실무부서인 여러 색(色)과 분사(分司)로 이뤄졌다. 1청 즉 도청 아래 군색(軍色), 응판색(應辦色), 연향색(宴享色), 나례색(儼禮色), 분공조(分工曹), 별공작(別工作), 분내자시(分內資寺), 수리소(修理所) 등 무수히 많은 부서가 있었다.<sup>51)</sup> 여기서 나례색은 나례도감

48) 『承政院日記』, 1837冊 純祖 1年(1801) 5月 30日 乙巳.

49) 『日省錄』, 純祖 3年(1803) 윤2月 5日 辛丑.

50) 『承政院日記』, 2133冊 純祖 20年(1820) 9月 17日 庚午.

이나 나례청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접도감의 업무 분야가 방대하더라도, 나례도감이나 나례청은 하나의 독립된 도감 또는 청으로서 나례 공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책임 관청이었다. 영접도감에서는 여러 업무 중에 사신이 올 때 열릴 개방 공연에 대한 관리 관청으로, 나례색<sup>52)</sup>을 두었다. 영접도감 내 나례색은 실제적인 무대 설비, 재인과 장인 동원 등의 맡은 나례도감이나 나례청과 소통하며 영접도감 안에서 관리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례도감이나 나례청이 영접도감의 소속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임시 기구임을 알려주는 기록도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의 3월 23일 기사<sup>53)</sup>를 보면, 우변나례도감 측에서 영접도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연히 당상과 낭청이 있는 대등한 도감의 위상을 지닌 우변나례도감의 업무를 영접도감이 규찰하려 하고 우변나례도감 소속 색리(色吏)를 절차 없이 잡아가려 했던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영접도감 소속 부서에 나례색이 있었지만, 실제 나례 공연을 실행하고 책임지는 일은 나례도감에 맡겨졌기에 이 같은 마찰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관리업무 분야의 유사성으로 그 책임이 중복되어 벗어난 서열 다툼 같은 것이다.

효종 대 기록에는 칙사 영접의 행사 잡역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관속(官屬)

51)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使臣接待)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30권 4호, 일지사, 2004, 97~101쪽.

52) 『承政院日記』, 69冊 仁祖 17年(1639) 5月 28日 甲申 “...宴享色一員, 米麪色一員, 盤膳色一員, 儼禮色一員, 竝四員減去, ...”(연향색(宴享色) 1원, 미면색(米麵色) 1원, 반선색(盤膳色) 1원, 나례색(儼禮色) 1원 등 모두 4원을 감하였으니); 818冊 英祖 12年(1736) 2月 1日 乙丑. “...宴享色郎廳二員, 儼禮色郎廳一員差出以待事...”(연향색 낭청(宴享色郎廳) 2원과 나례색 낭청(儼禮色郎廳) 1원을 차출하여). 이처럼 영접도감의 소속 부서의 나례색(儼禮色)은 『승정원일기』에서도 여러 건을 찾을 수 있다. 국역 한국고전종합DB 참고.

53) 『承政院日記』, 5冊 仁祖 3年(1625) 3月 23日 辛未. 국역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이 아닌 고립(雇立)<sup>54</sup>을 충원한 예가 등장한다. 한성부 남부는 조선 후기 사신을 접대하던 곳인 남별궁<sup>55</sup>과 나례를 준비하고 거행했던 태평관(太平館)이 있었던<sup>56</sup> 지역이다. 관련 기록에는 칙사가 올 때 한성부 오부(五部) 중 남부(南部)에 분주한 업무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하예(下隸)가 많이 필요함에도 실제 가용할 인력이 없어 고립 3명을 고용했는데 그마저 상부로 불러가게 되어 염려되는 상황에서 낭관(郎官)이 사라진 장례원(掌隸院) 전복(典僕)을 찾아 일을 시켜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57</sup>

전술한 정조 8년(1784) 사신 영접 시의 마지막 산대회 기록에서 나례청을 관리한 주무 관서가 좌우포도청(捕盜廳)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58</sup>

- 54) 이미 16세기 토지 검병으로 인한 대지주의 출현과 상업의 발달로 계층 분화, 방납(防納)의 폐단이 드러났었다. 기층민인 일반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상업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노비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정도였다. 더욱이 사람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지배층인 사족들은 군역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농후해지고, 군역(軍役)이 요역(徭役)화 되면서 양인의 역을 천민층인 노비나 유민이 대신 지게 되는 고립(雇立)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가 외교 행사인 칙사 영접 나례의 부족한 도성의 관속 인력을 고립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2007, 344~345쪽. 참조.
- 55) “남별궁(南別宮) 남부 회현방에 있다. 현재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다.” 유본에 지음, 박현욱 옮김, 『역주 한경지략』, 민속원, 2020, 83쪽. 『한경지략』은 정조 연간 한양의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이다.
- 56) “지금은 칙사(勅使)를 영접할 때에 나례(儼禮 가면극(假面劇))를 준비하여 거행하는 곳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칙사를 접대하는 규정은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권 비고편 - 『東國輿地備攷』 제2편, 국역 한국고전종합DB 참조.
- 57) 『承政院日記』, 133冊 孝宗 5年(1654) 10月 21日 丁丑. “又所啓, 南部館所至近之部, 一應諸役, 倍於他部, 而典僕名存實無, 雇立下人三名, 每勅使時, 一名送于儼禮都監, 部官兩官員, 率其二名下人, 急遽應役之際, 諸上司使令之輩, 盡爲捉去, 則獨坐空廳, 生事可慮. 令掌隸院屬典僕, 推給何如? 上曰, 言于該院.”
- 58) 『備邊司臚錄』, 167冊 正祖8年(1784) 10月 8日. “今十月初八日大臣備局堂上入侍時, 傳曰, 右捕廳兼從事官李永秀, 方帶承傳宣傳官之任, 捕廳從事官改差實職中, 今日內各別擇差事分付, 捕廳左捕廳兼從事官許湛, 儼禮都監郎廳亦當啓下, 而本職事務相妨, 副正仍任, 今番勅行, 儼禮都監堂上, 既因大臣言, 以捕將啓下, 依例兼管檢飭, 而兼從事官亦差郎廳,



조선 전기부터 좌변나례를 의금부, 우변나례를 군기시가 맡아 운영했지만, 조선 후기 어느 시점부터 좌우포도청이 양변 나례청의 업무를 주관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영조 대에도 포도청이 나례도감의 주무 관서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 후기 야담집인 『기문총화(紀聞叢話)』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조 연간 형조판서를 지내며 훈련대장과 포도대장을 겸임한 실존 인물인 장봉익(張鵬翼, 1646~1735)이 과거급제한 가난한 선비의 유가(遊街)를 지원한 이야기다. 장봉익은 포도청에 창우(倡優) 네 명과 좌우 산봉을 대령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포도청이 창우, 즉 광대나 재인을 동원하고 공연 무대 구조물인 산봉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나례도감의 주무 관서였음을 알려준다.<sup>59)</sup>

포도청은 범죄인 체포와 수사, 야간 순찰과 같은 지금 같으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조선 전기에 권설 기구였지만 조선 후기인 숙종 12년(1686) 상설기구로 승격됐고, 단속 범죄의 범위도 다양해져 사법적 위상이 높아졌다. 『육전조례(六典條例)』의 「병전(兵典)」에는 사회 풍속에서 포도청이 단속하는 여러 항목을 명시해 두고 있다. 어보(御寶)나 인신(印信) 위조부터 사도(私屠)나 첩도, 사적인 동전 주조, 무녀잡기(巫女雜技), 사학(邪學), 흥주(酗酒), 도고물화, 매음 등 매우 다양하다.<sup>60)</sup>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와 상업, 유흥문화의 발달에 따라 관련 범죄도 많아져 포도청의 업무는 나례 행사 시 안전 관리나 치안 유지에서도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如是之後，離禮廳有如前雜挈之學，捕將從事官，隨現各別重繩，以此意，先令廟堂嚴飭。”  
59) 사진실, 위의 논문, 131~133쪽; 김동욱 옮김,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국역 기문총화) 상』, 아세아문화사, 2008, 604~607쪽.

60) 『六典條例』卷8 兵典 捕盜廳 禁條. “御寶偽造, 印信偽造, 偽科, 偽札, 防納, 穀物和沙和水, 私屠·壘屠, 私鑄錢, 巫女雜技, 西北人人物招引, 邪學, 酗酒, 都買物貨, 操縱彼人交易唐物, 誨淫·和奸, 騙取人財, 坊民非法等事.”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제5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29쪽.

## 2. 재인청과의 교차 검토로 살핀 나례청의 기능

나례청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 재인 조직인 재인청과의 관계를 주목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조선 후기 재인청은 나례청이나 지방 관아와 같은 관청에 예속돼 공연행사에 동원되었고, 그 재인들이 백회나 잡회를 주도한 연회 담당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례청과 관련된 제도 변화의 흐름을 재인청 조직의 부상과 연결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인청은 조선 후기 재인들의 조직체다. 재인청은 신청(神廳), 악사청, 악공청, 공인청(工人廳), 광대청, 화랑청, 취고청(吹鼓) 장악청(掌樂廳), 무부청(巫夫廳) 등 다양한 이칭이 있다.<sup>61)</sup>

「나례청등록」(1626), 「갑신완문」(1824), 「팔도재인등등장(八道才人等等狀)」(일명 정해소지(丁亥所志), 1827), 「경기도창제도청안」(1836), 「경기재인청선생안(京畿才人廳先生案)」 등 그동안 밝혀진 문헌들을 통해 병자년(1636) 이전부터 각 도와 군 단위의 재인 조직이 있었고, 이들 외방 재인들이 사신 영접 공연에 동원되었으며, 지방 관아에서도 이들이 공연을 벌였던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인청이 정조 8년인 1784년 이후부터 1920년까지 존재했음이 밝혀졌다.<sup>62)</sup>

전술했듯이 「갑신완문」에서 정조 8년(1784) 이후부터 사신 영접을 위한 산대나례가 정지된 정황이 나타나며<sup>63)</sup>, 『경기도창제도청안』에서는 정조 8년 이후에도 재인 조직이 여전히 관가(官家)의 공연행사에 참여하면서 이전 보다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4)</sup> 이를 토대로 학계

61) 전경욱, 앞의 책, 285쪽, 이경엽, 「재인청의 역사적 전개 양상」, 『남도민속연구』 45권, 남도민속학회, 2022, 140~141쪽.

62) 전경욱, 앞의 책, 285~288쪽.

63) “…甲辰年以後 左右山不爲設行是乎乃…”. 김동욱, 앞의 책, 1961, 301쪽.

64) “…然甲辰時以前, 勅行造山時, 則所任自重矣甲辰以後既罷造山之規則, 吾輩便同閑散矣, 猶有應役於 官家, 亦有立規於廳內, 則豈敢絲毫忽慢哉, 噫惟我同契諸君之在京畿, 若四方之人, 咸聽我訓戒, 咸遵我約束…”,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

에서는 재인 조직이 전국적인 체계를 갖춘 기구인 재인청의 설립 시기를 1784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sup>65)</sup>

한편, 김종철은 충청도 재인청(광대청)과 중앙 나례청이 예납(例納)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영수증이 담긴 고문서(「동치 5년 병인년 3월 22일 수표」(1866))를 발굴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중국 사신 영접 나례가 있었던 1784년 이후에도 나례청의 존재가 지속했음을 시사했으며, 해당 수표에 적힌 나례청 대방들의 명단의 일부가 나례청 소속 장인(匠人)이자 재인(才人)일 것으로 추정했고, 발급 문서에 관청의 허가를 상징하는 ‘선인(蟬印)’<sup>66)</sup>이 찍혀 있음을 확인했다.<sup>67)</sup>

그동안 재인청 관련 문헌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재인청 설립 전후의 양상과 본고에서 전술한 나례청의 운영과 제도의 변화를 교차로 확인해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68)</sup>

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앞의 책, 281~282쪽.

- 65) 사진실, 앞의 책, 2017(2쇄), 324쪽; 이경엽, 앞의 논문, 148쪽;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재인청」.
- 66) 아키바 다카시는 “그들(산대놀이패)은 소위 계방(契房)이라 칭하는, 백성들이 공역의 면제나 기타 원조를 구하기 위해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금전 재물을 바치는 풍속을 이용해서, 봄에는 선인(蟬印) 가을에는 호인(虎印)을 찍은 조합의 증명서를 들고 다니며 연 2회 선착장·시장 등의 상가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들여 생활했다.”고 밝힌 바 있다. 秋葉隆, 「山臺戲」, 『朝鮮民俗誌』, 東京: 三六書院, 1954, 172쪽; 서연호, 『산대탈놀이』, 열화당 1987, 114면 재인용. 여기서 조합 증명서에 찍힌 인장 중에 하나가 매미모양인 ‘선인(蟬印)’임을 알수 있는데, 「동치 5년 병인년 3월 22일 수표」에도 매미 모양 인장의 형태가 나타난다.
- 67) 김종철, 「19세기 충청도 광대 도중(都中)의 존재와 그 권의 활동」, 『관소리연구』 제36집, 관소리학회, 2013 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5종의 충청도 광대 도중 관련 고문서를 분석해놓았다. 나례청 발급 수표 외에도 충청도 광대 조직이 동작진 사공청과 한강을 건널 때 치르는 비용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행정문서들이 있다.
- 68) 이경엽, 위의 논문, 172쪽 “<표6> 기록을 통해 본 재인청 관련 주요 연표”를 참고했고, 전술했던 산대나례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고려해 재구성했다.

〈표 1〉

시기	출처	나례청의 운영 및 제도 변화	재인청 설립 전후 양상
광해군 11년 (1619)	『광해군일기』 (1619) 9월 2일	(부묘 후 나례 관련) “희극을 하는 재인(才人)을 보내라고 기일 전에 각 도에 다 공문을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전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官)의 행정 명령을 통한 동원으로 ‘중양·감영·군현’ 단위로 행정문서가 왕래하고 관의 차출에 의한 재인 동원.
광해군 12년 (1620)	『광해군일기』 (1620) 12월 22일	(명 사신 영접 나례 관련) “광대들을 정월 보름 이전에 속히 불러모아 일일이 정비하는 일을 의금부와 군기사로 하여금 하루 이틀 안에 각별히 살피도록 하라.”	
인조 즉위년 (1623)	『인조실록』 (1623) 3월 25일	부묘 후 나례 정지	
인조 4년 (1626)	『나례청등록』 (1626)	(명 사신 영접 나례 관련) 경기, 충청, 경상, 전라 4도의 재인 동원. 나례도감 주관 관청은 의금부와 군기사로 나타남. 험가산대, 즉 예산대(산봉)가 설치됨.	"
영조 1년 (1725)	<봉사도> (1725)	(청 사신 영접 나례 관련) 예산대인 산봉 주변에서 탈춤, 줄타기 등 각종 잡희가 연행되고 있었음.	"
영조 연간 (1735년 이전)	『기문총화』	포도대장 장봉익이 가난한 과거 급제자의 유기를 돕기 위해 산봉과 광대를 대령하라고 포도청에 명령. 나례청 주무관청이 포도청으로 변경.	기존의 의금부나 군기사가 아닌, 포도청에서 재인을 동원, 관리.
영조 14년 (1738)	『영조실록』 (1738) 2월 19일	“산봉(山棚)을 베풀어 칙사를 영접했었는데, 관광하던 사람들 가운데 밟혀 죽은 자가 많았으므로...”	"

영조 20년 (1744)	『국조속오례의』 (1744)	부묘 후 나례 혁파 제도화	
정조 8년 (1784)	『훈국등록』 (1784) 11월 5일 등	문효세자 책봉 관련 봉전칙을 전하는 사신 영접 관련 나례 준비과정에서 총포 사건 등 발생.	"
정조 8년 (1784) 이후	「갑신완문」 (1824)	“...갑진년 이후 좌우 산대(산방)가 설행되지 않았으나...” 중국 사신 영접 시 산대나례 정지	
	「경기도창제 도청안」(수정 안) (1836)	『실록』 기록에서 사신 영접 나례의 기록이나 나례도감(나례청)의 언급이 나타나지 않음.	“갑진 이후에 조산의 규칙이 깨지자···여전히 관가(官家)의 공역에 응하고, 또 청내(廳內)에 규칙을 세웠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하고 태만하겠는가?” (재인 조직이 전국적 기구인 재인청으로 체계화)
순조 27년 (1827)	「정해소지」 (1827)	나례청의 주무관서였던 포도청이 여전히 재인 조직과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음.	호조가 발급한 「갑신완문」(1824)을 무단 탈취한 공주 감영 공인에 대해 팔도재인 40명이 좌포청(左捕廳)에 올린 진정서
고종 3년 (1866)	「동치 5년 병인년 3월 22일 수포」 (1866)	나례청이 1784년 이후에도 지속.	지방 광대 도중이 나례청에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예납 영수증

재인들은 조선 전기부터 의금부, 군기시에 의해 지방 관아를 통해 왕의 행행(行幸)이나 사신 영접 시 차출돼왔다. 위의 <표 1>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도 양 관청이 나례도감이나 나례청의 주무 기관이 되어 재인 동원을 주도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국가적 산대회 설행이 줄어들었다. 우선 부묘 후 국왕의 환궁 행차 시의 나례를 인조가 정지시켰고, 영조는 이를 제도화시켰다. 영조 대 기록인 「기문총화」에서 나례청의 주무관청이 의금부·군기시

가 아닌 포도청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국가에서 주관한 나례 행사 자체가 축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례도감의 주무 관서인 포도청의 하급 군관인 포도부장이나 그 이하 포졸 등 관속들은 재인이나 장인의 모집에 대한 부담이 줄어 한양과 그 인근의 경증우인을 중심으로 관리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며, 포도청 본연의 업무에 걸맞게 연회행사 관련 행정과 관리 및 운영 요원으로서의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영조 14년(1738) 포도청 관할 하의 사신 영접 나례에서 산대희로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이후 거의 50년 만인 정조 8년(1784) 산대나라가 다시 열렸지만, 해당 행사 이후 중국 사신 영접 나례는 더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공의(公儀)의 행사는 줄어들었지만, 상품화폐 경제와 도시 발달로 시정의 공연 문화는 활기가 돌았고 새로운 장르인 판소리, 탈춤 등이 17세기 후반부터 대중오락으로서 향유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 국가적 조산위희(造山爲戲)는 사라졌지만, 19세기까지 시정의 공연은 많아졌고, 재인들의 연회는 대중오락으로서 상품화되어 갔다. 「경기도창제도청안」은 국가의 산대나라가 사라진 1784년 이후에 재인청으로 재인 조직이 더 체계화되면서 시정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은 대광대패나 솟대쟁이패 등 유량예인집단이 도시나 장사에서 흥행을 떨칠 수 있었던 환경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여전히 왕실과 관아의 공연 공간은 재인들에게 명성과 보상을 보장하는 통로였고, 시정에서의 무대 역시 공적(公的) 허가와 개입이 필요해 관청과의 관계는 중요했다.

『실록』에서 1784년 이후 나례도감이나 나례청은 발견되지 않지만, 「정해소지」는 나례청의 주무 관서였던 포도청이 재인청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더욱이 「동치 5년 병인년 3월 22일 수표」(1866)를 분석한 김종철의 연구를 통해 19세기 후반에도 나례청이 존재했고, 재인청은 경향(京鄕)의 관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공연 활동 기회와 그에 따른 수입을 창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는 재인청을 통해 공연행사에 필요한 재인 동원의 효율성을 도모했던 것뿐만 아니라 부세(賦稅)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볼 수 있다.

나례청이 행사 때만 설립되고 사라지는 임시관청으로서만이 아니라, 점차 상설관청으로서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만하다. 『추관지(秋官志)』(1781)에는 형조(刑曹) 안의 9개 실무부서인 구방(九房)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방 가운데 중앙의 노비와 포로를 관장하는 장례사(掌隸司)의 이방(二房), 즉 예이방(隸二房)이 관할하는 다양한 관청 중 하나로 나례청을 포함하고 있다.<sup>69)</sup> 18세기 후반 점차 국가 공의(公儀)의 연희행사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한편, 민간의 연희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나례청이 시정이나 관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행사의 중앙 관리 관청이자 전국적인 재인 조직으로 성장한 재인청의 감독기관으로서 부세(府稅) 제도를 운영하는 기구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례청의 관속들과 재인청의 재인들 간에 공연 실무의 행정적, 제도적인 교류의 방식이 구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V. 나가며

본고는 조선 후기 국왕 환궁 행차나 중국 사신 영접 시 산대회를 담당한 임시기구인 나례청의 공연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의전 행사에서는 인형 잡상으로 장식한 거대한 산 모양의 무대 구조물인 산대(山臺)를 세워 주변에서 가면극, 줄타기 등 잡희를 벌이는 산대희(山臺戲, 산대나례)가 연행됐다.

69) 『秋官志』卷1 職掌 九房. “隸二房掌京奴婢. 佐郎一員. 句管 吏曹·漢城府·弘文館·成均館·承文院·濟用監·瓦署·內需司·禮葬都監·儷禮廳·光陵·順陵·恭陵·翼陵·黃海道.” 조선 시대법령자료.

그동안 학계에서는 정조 8년(1784)에 산대나례가 폐지됐고, 나례도감(나례청)도 해체됐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나례청이 그 이후에도 지속해왔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나타난 바 있다.

필자는 기존 선행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례청을 중앙 관청 조직으로서 바라보고, 그동안 나례청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정책 변화들을 점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부묘 후 나례의 공식적인 폐지 시기는 기존에 알려진 영조 30년(1754)이 아니라 영조 20년(1744)인 것으로 확인했다.

산대 중 고정적이고 규모가 가장 큰 대산대(大山臺)가 선조 대까지 세워졌다가 이후 예산대(兪山臺)만 설치됐고, 때로는 예산대가 생략된 나례가 연행되기도 했다.

정조 8년(1784) 산대나례의 예행연습 시 발생한 사건들 이후 칙사(勅使) 방문 시 나례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1784년 산대나례의 공식적 폐지'라기 보다 해당 일정이 생길 때마다 나례 설행을 하지 않기로 한 정책적 판단이 순조 대까지 이어지면서 고착된 것이었다.

나례청이 영접도감의 부속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상을 지닌 별도의 기구였고, 중복업무로 인해 혼선과 마찰도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례청의 역할 변화는 조선 후기 관(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전국적 재인 조직체인 재인청(才人廳)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나례청의 정책적 변화들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재인청의 활동 양상을 교차로 비교해 국가적 산대회의 변화와 재인들의 공연 연행 방식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가 공연행사의 축소, 시정 공연의 대중화 및 상업화와 함께 관청의 부세(負稅) 대상으로서의 재인들의 연회가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례청이 19세기까지 존속했으며, 재인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상설관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참고문헌

### 사료

「京畿道唱才都廳案」,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同治五年丙寅三月二十二日手標」,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日省錄』, 「完文等狀八道才人」, 『六典條例』,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八道才人等等狀」, 『訓局謄錄』.

### 단행본 및 논문

-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使臣接待)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30권 4호, 일지사, 2004.
-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동욱 율김,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국역 기문총화) 상』, 아세아문화사, 2008.
- 김종철, 「19세기 충청도 광대 도중(都中)의 존재와 그 권익 활동」,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3.
-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한국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사진실, 「나례청등록」, 『문헌과해석』, 태학사, 창간호 1997.여름호.가을호.겨울호 1998.
- \_\_\_\_\_, 「山臺의 무대양식적 특성과 공연방식」, 『구비문학연구』 7권,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 \_\_\_\_\_,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 \_\_\_\_\_,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태학사, 2017.
- \_\_\_\_\_, 『한국연극사 연구』, 태학사, 2017(2쇄).
- 서연호, 『산대탈놀이』, 열화당, 1987.
- 송지원, 「조선시대 산대(山臺)의 역사적 전개」, 『한국문학과 예술』 28, 2018.
-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공저, 심우성 율김, 『朝鮮巫俗의 研究. 下』, 서울 : 東文選, 1991.
-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山臺戲」, 『朝鮮民俗誌』, 東京: 三六書院, 1954.

- 안대회, 「18·19세기 탈춤꾼 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유본예 지음, 박현욱 옮김, 『역주 한경지략』, 민속원, 2020.
- 윤아영, 「나례 준비기관의 변천과 양변의 전통」, 『국악원논문집』 제26집, 국립국악원, 2012.
- \_\_\_\_\_, 「조선후기 儺禮의 용도와 연행종목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15, 온지학회, 2006.
- 이경엽, 「재인칭의 역사적 전개 양상」, 『남도민속연구』 45권, 남도민속학회, 2022.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모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제43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
- 전경옥, 『한국 전통연희사』, 학고재, 2020.
- 조원경, 「仁祖時代의 儺禮謄錄」, 『서울과 역사』, 서울역사편찬원, 1958.
-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제5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2007.

## 인터넷 자료

- 무형유산디지털아카이브  
조선시대법령자료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고전종합DB

---

**Abstract**

THE OPERATION AND CHANGES IN THE NARYECHE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OH JINHEE (OH, JIN HEE)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 and changes of the Naryecheong (Naryedogam), which managed Sandaehae (Sandaenarye) during royal palace events and ceremonies for receiving Chinese envoys in late Joseon.

By analyzing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aryecheong, the study confirms that the official abolition of the Sandaenarye, previously believed to have occurred in the 3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54), actually took place in the 20th year (1744). Fixed Daesandae structures were used until the 35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1602), after which only mobile Yesandae structures were employed, with some performances even held without them. During the 8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84), multiple violations of royal commands arose while preparing the Sandaenarye for a Qing envoy celebrating Crown Prince Munhyo's appointment. Although the planned Sandaenarye was carried out, such events ceased afterward. This does not indicate its official abolition in 1784, as previously thought, but rather a policy decision to discontinue performances, which persisted and became entrenched by King Sunjo's reign.

The Naryecheo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aced conflicts with the Yeongjeopdogam due to overlapping duties. Cross-examining changes in the operations of the Naryecheong and Jaein organizations, the study finds that the transfer of Naryecheong's oversight to the Podocheong (Police Bureau), which resulted from the decline in national Narye ceremonies and the rise of popular entertainment. Furthermore, the Naryecheong likely continued to exist after 1784, evolving into a permanent institution supervising the Jaeincheong, private organizations made by entertainers.

Key Words : Naryedogam, Naryecheong, Narye, Sandaenarye, Sandaehae, Jaeincheong, Podocheong